

2018년도 보험법 주요 판례의 분석

강 대 섭*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다수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공서양속 위반 |
| II.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해지와
보증수수료의 반환 | V. 생명보험 계약자의 변경과
보험자의 승낙 |
| III. 손해방지의무의 대상으로서 손해 | VI. 맺는말 |

I. 머리말

2018년에 나온 보험판례로서는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제3자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그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채무보증약정을 이루는 보증규정과 시행세칙의 중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보증채무의 성립시기와 보증사고 발생 전에 보증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증료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보증채권자에 해당하는 제3자가 자신이 가지는 채권으로 주채무자인 조합원의 채권을 상계하여야 할 손해방지의무가 있는지를 다룬 것이 있다.

그리고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생명보험에서 계약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 투고일자 : 2018년 11월 1일, 심사일자 : 2018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12월 22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되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약관의 규정이 유효한지가 문제된 것도 있다. 그리고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의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피보험이익의 귀속을 다른 판례도 있다.

해상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귀속 문제는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정형적인 거래조건의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추후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채무보증계약과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판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쟁점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기로 한다.

II.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해지와 보증수수료의 반환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1. 사실관계

X회사(원고)는 아파트의 건설·공급 사업을 수행하는 시행주체이고 Y보증공사(피고)는 주택분양보증사업을 하고 있다. X회사는 2009. 1. 13. Y보증공사와 보증기간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로,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사용검사 예정일을 2011. 3. 31.로 정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인 X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Y보증공사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보증료를 지급하였다. X회사는 2009. 1. 14.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나 입주자모집을 공고하지는 않았다. Y보증공사의 보증규정과 그 시행세칙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으로 보증기간이 개시된 후 '분양률 저조 등'의 사유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 취소되어 보증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일을 기준으로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불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X회사는 2010. 8. 24. Y보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을 공

고하지 못하여 수분양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증료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Y보증공사는 2010. 11. 3. 보증기간 내에 보증채권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분양보증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보증채권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 관할판청은 2010. 10. 28. X회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에 Y보증공사는 X회사에게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승인을 취소할 날까지의 보증료를 제외하고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계산하여 반환하였다.

2. 판결요지

주택분양보증계약은 시행주체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이나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성질상 보증보험과 유사하다.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보증의 성격과 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과 보증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며, 이는 성질상 보증보험과 유사한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해설

(1)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의의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성질에 대하여서는 종래에는 민법상의 보증으로 본 경우가 있다.¹⁾ 이와 달리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²⁾ 현재는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34727 판결 등.

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1999. 10. 8. 선고 99다27675 판결 등.

한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³⁾으로 사실상 정리되었다고 한다.⁴⁾

이와 같이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하여 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과 보증의 양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⁵⁾ 따라서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과 보험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이 사건 판례도 주택분양보증계약은 분양시행주체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이나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있다.

상법은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726조의7. 이하 상법 조문을 표시할 때에는 '상법' 표기를 생략한다). 이것은 보증보험이 형식적으로는 보험이고 실질적으로는 보증이지만 보험의 성질과는 일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보증성을 보다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해된다.⁶⁾

이와 같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채무약정에 관한 약관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사고발생전의 계약의 임의해지에 관한 다른 보험료 반환의 법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해지에 준용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있다.⁷⁾

3)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173 판결.

4) 김성엽,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건축관련판례 50선, (대구판례연구회, 2012), 284~285면.

5)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상법상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어서(보증보험은 2014. 3. 11. 신설되었다) 보증보험은 상법상의 보험이 아니고 보험업법상의 보험으로 이해하였다. 이무상, "보증기간의 경과와 계약보증금의 청구", 건축관련판례 50선, (대구판례연구회, 2012), 273면.

6) 장덕조, 상법강의 제2판, 법문사, 2017, 1204면.

7) 건설공제조합이 주계약상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수의 견으로 이를 긍정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김성엽, 앞의 논문, 287면 이하 참조.

(2) 보증약관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주택분양보증사업자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성립을 위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상법 제638조의3 참조). 약관설명 의무는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에 관하여 통설은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은 계약의 예문 내지 모형에 불과하며 상대방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한 때, 즉 합의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⁸⁾ 판례도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여⁹⁾ 계약설을 취하고 있다.¹⁰⁾

이와 같은 계약설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약관설명 의무를 지우는 이유는 약관이 사업자에 의해 정형적으로 작성되고 계약의 내용이 대부분 약관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이 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불측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본다.¹¹⁾ 보험에 관한 판례도 보험약관 설명 의무의 근거를 이와 같이 이해하여,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 상대방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²⁾

상법은 보험사고 발생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제649조 제1항 본문과 제3항). 타인을 위한 보

8) 이준호, 민법강의 재17판, 법문사, 2011, 1363면.

9)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동지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1985. 11. 26. 선고 91다5624 판결 등.

10) 장덕조, “약관설명 의무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상사판례연구 제26집 제1권(한국상사판례학회, 2013), 52면.

11) 강대섭 외 14인, 상법판례백선, 법문사, 2018, 939면.

1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229924 판결 등. 강대섭, “2015년 보험법 판례의 분석과 평가”, 금융법연구 제5권 제2호(부산대 법학연구소, 2015.12.), 4~6면 및 이준호, 앞의 책, 1367면 참조.

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증증권을 소지하여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49조 제1항 단서). 이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른 타인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보증보험은 채권담보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주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¹³⁾

이 사건에서 Y보증공사의 보증규정과 그 시행세칙에서 정한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해지와 보증료의 반환에 관한 조항, 즉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으로 보증기간이 개시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되어 보증서를 반환하는 경우에 보증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를 기준으로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불한다'는 내용은 '보험사고발생전의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에 관한 상법 조항을 풀어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법에서 정하여진 '사고발생전의 계약의 임의해지와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Y보증공사는 약관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주택분양보증계약이 보증기간 이내에 해지될 때에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급부의 변경, 피고의 면책, 원고의 책임가중, 보험사고의 내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증기관인 피고에게 유리한 조항이거나 피고에게 허용된 재량을 벗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타당하다.

(3)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해지와 보증료의 반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을 때 장래 주채무가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보증채무가 성립하고, 보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증채무가 성립하기 전에는 보증을 취소하고 보증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지만, 보증채무가 성립한 후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여부를 묻지 않고 보증을 해지할 수 있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를 기준으로 취소일 다음날부터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전의 보험계약의 해지와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의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 X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증계약의 전부 또는

13) 장덕조, 앞의 책, 1205면.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X회사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증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택분양보증계약은 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증서를 소지하여야 하는데, X회사는 아직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증서를 반환하는 것으로 보증계약을 해제(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에 따른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에서 '미경과보험료'란 보험계약이 해지될 때의 보험료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보험료를 의미한다. 보험사고 발생 전이라도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여 담보하였다면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한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는 비록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경과된 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¹⁴⁾

따라서 주택분양보증계약이 해지되고 이에 따라 보증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내용이 확정되면, 보험사고 발생전의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에 관한 상법 조항이 준용되어 X회사는 미경과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만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원심은 이 사건 보증계약의 해지와 보증료 반환에 관한 보증규정과 시행세칙의 해당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보증사업자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분양를 저조 등'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 사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이 조항은 '분양를 저조'를 그 사유로 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실제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해지와 보증료의 반환을 보증보험의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법리를 정한 것으로 보아¹⁵⁾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인

14)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5, 149면.

15) 이 사건 판례는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확립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은 그와 같이 해석된다고 하였다. 약관의 객관적 해석에 대해서는 맹수석, "보험약관의 법적 쟁점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검토-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충남대학교, 2016), 154면 이하 참조.

정하지 않았다. '분양률 저조 등'의 사유는 승인이 취소되는 여러 사유 중 하나를 예시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 취소 사유를 제한하는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보증채무의 성립 시기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을 때 장래 주채무가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보증채무가 성립하고, 보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증채무가 성립하기 전에는 보증을 취소하고 보증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지만, 보증채무가 성립한 후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여부를 묻지 않고 보증을 해지할 수 있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일을 기준으로 취소일 다음 날부터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대해 보증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준용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Ⅲ. 손해방지의무의 대상으로서 손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1. 사실관계

甲건설공제조합(피고)은 그 조합원인 乙주식회사(채무자)가 제3자 丙(원고)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제3자(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보증의 내용은 甲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었다.

乙회사는 丙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丙은 乙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었으나, 丙은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하지 않은 상태로 채무자 乙회사의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丙이 乙회사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 되었다. 회생절차 중에 乙회사는 공사대금채권으로 보증채권자인 丙이 가지는 회생채권인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甲조합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원고 丙이 채무자인 乙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채권과 乙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하지 않은 것은 상법상의 손해방지의무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를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1조 본문은 파산절차에서와는 달리 명시적으로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채무자의 재산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의 변제뿐만 아니라,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상계와 보증인 등 제3자에 의한 상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내용에는 손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 손해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의 결과로서 생기는 손해만을 뜻하고, 보험자의 구상권과 같이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자에게 부담되는 손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상계를 할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상계를 해야 할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3. 해설

(1) 보증계약에 대한 보증규정의 적용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계약이다(제726조의5). 이 사건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의 지급책임은 지는 점에서 그 성질이 보증보험과 유사하나,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

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에 관한 민법 제 434조 등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이 규정에 의하면, 보증인인 甲조합은 보증계약자인 채무자 乙회사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만큼 甲조합의 보증채권자 丙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도 소멸한다.¹⁶⁾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채권의 소멸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 乙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甲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 丙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회생절차에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이 제한되므로 계약보증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甲조합의 상계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2) 회생절차 중의 회생채권의 변제 등의 제한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판례는 이처럼 회생절차 중에 회생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이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회생계획에 의한 자본구성 변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종전의 채권·채무관계를 일단 동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변제 등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회생채무자의 적극재산이 감소되어 회생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없고, 일부 회생채권자에게만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우선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깨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보증인 甲조합이 주장하는 주채무자 乙회사의 상계권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피보험자의 상계권 불행사와 손해방지의무 위반 여부

1) 손해방지의무

손해방지의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1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9568 판결 등 참조.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제680조 제1항).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증가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지만, 상법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도 손해의 방지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의 목적을 관리·지배하고 있으며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그 이익을 받는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이다. 손해방지의무는 인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해보험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¹⁷⁾

2) 손해방지의무의 발생시기와 범위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 의무이기 때문에 보험사고의 발생 자체를 방지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손해의 완전한 방지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가능하고, 보험사고 발생 전에 손해방지의무를 부담시키게 되면 보험계약자 등에게 부담이 되지만 손해발생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불가피하거나 확실한 때에도 손해방지의무가 개시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¹⁸⁾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므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것은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손해방지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때부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생겨난다고 보고 있다.¹⁹⁾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방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²⁰⁾

17) 박세민, 보험법 제4판, 박영사, 457면; 양승규, 앞의 책, 232면(보험사고와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는 그 때부터 손해방지의무가 생겨난다).

18) 장덕조, 앞의 책, 1138면.

19)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등.

20)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손해배상책임이 없는 피보험자가 가해자로서 교통사고 직후 자신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받게 함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는 방법으로서 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 시키거나 손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 활동은 화재발생시 소화 등 화재진압행위나 구조활동, 가재도구의 반출 등 직접적인 것일 수도 있고 증거나 증인의 확보,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확보 등 간접적인 것일 수도 있다.²¹⁾ 이 때 방지 또는 경감 대상으로서 손해에 관하여 이 사건 판례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의 결과로서 생기는 손해를 의미하고, 보험자의 대위권이나 구상권과 같이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자에게 부담되는 손해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²²⁾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 乙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되고, 이에 따라 乙회사는 丙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되고 甲조합은 피보험자인 보증채권자 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증금을 지급한 甲조합은 乙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회생절차로 인하여 그 구상권의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결과 입게 되는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680조에서 말하는 손해방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甲조합은 丙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3) 손해방지의무의 정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의 정도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정도의 주의로써 신의칙에 따라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노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 노력에는 행위의 목적만 있으면 되고 결과적으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이라는 효과가 발생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4) 의무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하여서는 손해방지의무를 손해보상청구의 전제조건으로 볼

으로써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보험자의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1) 박세민, 앞의 책, 461면. 양승규, 앞의 책, 233면; 장덕조, 앞의 책, 1138면.

22) 동지 : 서울고법 1999. 2. 3. 선고 98나36360 판결.

수는 없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즉 그 의무 위반이 없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²³⁾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다.²⁴⁾

이 사건에서는 보증채권자인 丙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손해방지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문제되지 않는다.

IV. 다수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공서양속 위반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1. 사실관계

X보험회사는 Y 및 그 가족들과 2010년 한 해 동안 Y 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생명 및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Y의 가족인 소외인은 2010. 2. 25. Y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6. 24. 보험계약자를 소외인에서 Y로 변경하였고, X보험회사와 Y는 2010. 7. 21. Y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 이를 갱신하였다. Y는 이들 보험계약에 따라 X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X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인 소외인 및 Y가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Y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를 소외인에서 Y로 변경하기 전, 즉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Y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이

23) 양승규, 앞의 책, 234면; 장덕조, 앞의 책, 1138면.

24)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무효가 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해설

(1)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상법은 손해보험에서는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인정하고 있다. 즉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기간이 동일 또는 중복되더라도 수개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된 수개의 보험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게 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에 발생하는 손해 이상을 보상하게 되면 보험이 도

박화되고 도덕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상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르도록 하고, 중복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제672조 제1항과 제3항). 또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초과 여부를 묻지 않고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진다(제672조 제2항).²⁵⁾

그러나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인보험에서는 도덕적 위험이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초과중복보험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중복보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등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지 못하여 중복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²⁶⁾ 그래서 도덕적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인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가 고지·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가져오는지가 문제되며, 인보험에서는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함을 이유로 무효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다수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통지의무

손해보험에서든 인보험에서든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²⁷⁾ 판례는 손해보험에서는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²⁸⁾ 왜냐하면 다수의 손해보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

25)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 통지의무를 둔 이유는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방지와 각 보험자의 보상비율을 알기 위한 것이지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주기동, “중복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75호(한국법학원, 2003), 161면).

26) 김문희,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한 민법 제103조의 적용요건”, 판례연구 제18집(부산판례연구회, 2007), 387~389면.

27) 양승규, 앞의 책, 120면; 박세민, 앞의 책, 200면; 주기동, 앞의 논문, 162면.

을 초과하지 않는 한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통지의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은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²⁹⁾을 말하는 것으로 보거나,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의 사실을 고지의무에서의 중요한 사항과 마찬가지로³⁰⁾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증가'³¹⁾ 또는 다른 종류의 위험으로의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한, 보험인수의 관행을 고려할 때 그 해당 여부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제한되고, 도덕적 위험에 관한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도덕적 위험에 관한 사실, 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보험사고발생을 가장함으로써 부정하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고려하는 보험사고 발생율의 측정과는 관계가 없는 사실로 보아야 한다. 판례도 같은 입장에서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³²⁾

그렇지만 보험자는 이를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판례는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³³⁾ 상법은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28)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29)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동지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등.

30) 강대섭,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와 계약해지권", 상사판례연구 제25집 제3권(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138면.

3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4750 판결.

3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중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사실을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의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³⁴⁾

(3)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의 체결과 공서양속 위반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계약의 권리의무의 내용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 있다(제659조 제1항). 그러나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³⁵⁾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과도한 생명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로 이를 주장하는 전례는 없다고 한다.³⁶⁾ 학설은 대체로 과도한 인보험계약에 대하여 반사회질서법리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³⁷⁾

다수의 인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아닐지라도, 대법원 판례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다.³⁸⁾ 이렇게 보는 근거로서

3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4)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35) 예컨대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되고 있지만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의 제시는 쉽지 않다.

36) 김문희, 앞의 논문, 400면.

37) 위의 논문, 400~401면.

38)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이 경우에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공동상

는 대법원은 '계약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을 인정해 왔다.³⁹⁾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 판례에서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이 무효임이 인정되고 있다. 그 이유로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⁴⁰⁾

그런데 반사회질서적인 동기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판례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 사안에서 이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서는 '보험료의 과다.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 권유가 아닌 자의에 의한 다수의 보험 가입,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 다수, 보험 가입 사실과 직업·소득에 대한 허위 고지, 계약체결 후 단기간에 보험사고의 발생' 등이 제시되고 있다.⁴¹⁾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보험계약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속인 중 1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39)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40)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41)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9다12115 판결에서는 자신이나 그 처를 보험계약자로, 그 처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처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처를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던 전력, 석연치 않은 보험사고 경위, 경제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료 등을 간접사실로 제시하고 있다.

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⁴²⁾ 그렇지 않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⁴³⁾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금의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하여 종전 판례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피고와 그 가족들이 단기간에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이와 같은 다수의 보험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와 그 가족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지급받은 보험금이 그들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등 재산에 비추어 매우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을 이유로 피고의 처인 소외인과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과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하고 판단하였다.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지급보험금의 반환

다수의 보험계약이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은 반환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된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제669조 제4항 참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인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의 성격상 피보험자가 보험금수익자로 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다수의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보험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타인의 위한 보험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제3자를 위한

42)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4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기간이 장기간(3년 내지 20년)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내지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수익자가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저축적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도 다수 있다는 사실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판결(이 사건에서는 지출 보험료액이 사회통념상 지극히 이례적인 금액이 아닌 점, 보험회사 측의 권유로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의 병세에 비추어 위장입원이나 과도한 입원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계약에서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제3자의 권리는 확정된다.⁴⁴⁾ 따라서 그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민법 제541조). 그러나 보험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 자체에 의존하므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보험 수익자도 이 권리를 상실한다고 본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은 당연한 결과이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는 그 요건이나 효과가 다르지만, 개별적인 사안에서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와 같은 구제수단이 병존적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⁴⁵⁾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에 관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하였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이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 있다(제655조 제1항). 그러나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V. 생명보험 계약자의 변경과 보험자의 승낙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1. 사실관계

甲은 2012. 11. 21. Y보험회사(피고)와 X(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일정 나이에 이를 때까지 생존하면 그 때부터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인 甲에게 매월 일정액

44) 김준호, 앞의 책, 1410면.

45)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의 연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과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연금보험 약관 제6조는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하여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기본보험료와 계약자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⁴⁶⁾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않고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⁴⁷⁾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연금형의 종신형에 한함)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甲은 2013. 9. 27. 공동상속인인 X를 유언집행자로 정하고 Y보험회사에 가입한 연금보험금을 X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甲은 2014. 2. 2. 사망하였다. X는 Y보험회사에 대해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Y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X는 자신이 연금보험의 계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Y보험회사는 2014. 3.경부터 X에게 연금보험에 따른 연금보험금을 매월 지급하였다.

2. 판결요지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또는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제730조),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의 신용도나 채무 이행능력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다(제733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제

46) 이 경우 회사의 승낙은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교부한다.

47)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제734조 제1항).

731조 제1항, 제734조 제2항).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도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여 보험료 지급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다.

3. 해설

(1) 연금보험의 의의

연금보험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보험이다(제735조의2), 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나이가 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보험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정기연금보험이 있다.

일정한 기간까지 생존하면 생존보험금을,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생사혼합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연금보험은 타인의 생사혼합보험으로서 종신연금보험이라 할 수 있다.

보험계약에도 계약법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변경·소멸시킬 수 있다. 특히 생명보험계약은 보통 장기간에 걸치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의 변경 필요성이 높는데, 상법은 이 점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지위 승계(제733조 제3항 단서)와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제733조).

이 사건 판례도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또는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제730조),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변경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이 약정은 유효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제638조) 위험변경·증가통지 및 금지의무를 부담한다(제652조와 제653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고(제731조 제1항, 제733조, 제734조 제2항)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제2차적으로 보험료지급의무를 지게 된다(제639조 제3항).

이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의무는 간접의무 내지 자기의무이고, 이들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책된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도 보험자의 입장에서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나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서는 의무의 이행에 관심이 있을 뿐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는 주된 관심이 아니지만, 보험료지급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계약자의 이행능력이 중요하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⁸⁾

이 사건 판례는 위와 같은 사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신용도나 채무 이행능력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이전에만 보험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양도에는 보험자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48) 정진욱, “생명보험계약지의 명의변경”, 상사판례연구 제23집 제2권(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183면.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⁴⁹⁾ 입장에 비추어 비판의 여지가 있다.

(3) 평가

이 사건에서는 X와 다른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보험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X가 甲의 지위, 즉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게 되면 X는 생존한 때에는 일정한 나이에 이른 후부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망한 때에는 X의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과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X가 보험계약자로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제736조 제1항). 그러나 X가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X는 甲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X가 사망시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과 책임준비금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인 Y보험회사의 승낙 없이 유증과 같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공정증서의 문언상 甲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X에게 유증하려고 했다가보다는 연금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유증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

VI. 맺는말

공제조합의 채무보증사업은 민법상의 보증이면서도 보증보험에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증 규정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판례는 이와 같은 채무보증약정에 대해 약관설명의무 및 보험 사고 발생 전의 임의해지와 보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은 위험측정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나 보험자가 이에 대하여 질문한다면 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고지의무가 인정되

49) 위의 논문, 203면.

지 않는 경우 생명보험계약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이유로 무효로 할 수 있음은 판례의 일관된 흐름이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도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은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다.

생명보험계약은 장기의 계약이므로 사정변경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판례는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보험자의 승낙을 필요요건으로 볼 것인지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대섭,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와 계약해지권”, 상사판례연구 제25집 제3권(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 강대섭 외 14인, 상법 판례백선 제6판, 법문사, 2018.
- 김문희,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한 민법 제103조의 적용요건”, 판례연구 제18집(부산판례연구회, 2007).
- 김성엽,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건축관련판례 50선, (대구판례연구회, 2012).
- 김홍기, 상법강의 제3판, 박영사, 2018.
- 맹수석, “보험약관의 법적 쟁점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검토-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재판적 해석의 원칙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충남대학교, 2016).
- 박세민, 보험법 제4판, 박영사, 2018.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 이무상, “보증기간의 경과와 계약보증금의 청구”, 건축관련판례 50선, (대구판례연구회, 2012).
- 장덕조, 상법강의 제2판, 법문사, 2018.
- 장덕조, “약관설명 의무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상사판례연구 제26집 제1권(한국상사판례학회, 2013).
- 정진욱, “생명보험계약지의 명의변경”, 상사판례연구 제23집 제2권(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7판, 박영사, 2015.
- 주기동, “중복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75호(한국법학원, 2003).

<국문초록>

공제조합이 조합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은 보증보험과 유사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과 보험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보험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판례는 보증계약의 해지시에 미경과 보증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은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설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보증사업자의 책임이 개시된 경우에 보험계약이 보증사고 발생 전에 해지된 때에는 미경과 보증료를 계산하여 반환하면 된다. 또한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하지 아니한 것은 손해방지의무의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인보험은 피보험이익을 전제하는 손해보험과 달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 판례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보험금의 부정취득 목적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제3자를 위한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는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생명보험계약은 장기의 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자의 신용도나 채무 이행능력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위를 변경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

주제어 : 보증계약, 보증보험, 약관설명 의무, 손해방지의무, 보험계약자의 변경

< !"#%&#>

An Analysis of Major Cases of the Insurance Act 2018

'%(, *%+ ,+-!

&-(#%&# #.##)/%\$%(#++" #.+ 0%12+(# -3 %)/%\$%(#++ 4+0-"5# #.## #.+ 2+2!+\$ -6+" !1
-!#%5(5() %)/%\$%(#++ &-225""5-(3\$-2 #.+ 2+2!+\$ 5" % &-(#%&# 3-\$ % #.5\$4 0%\$#1 "5257%\$ #-
)/%\$%(#++ 5("/\$%(&+. 8- #.+ +9#+(# 0+\$25##+4 !1 5#" (%#/\$+, #.+ 0\$-:5"5-(" -3 !-#. 6%\$\$%(\$5+" %(4
5("/\$%(&+ %0071.

8. + 0-75&1.-74+\$.%" %(-!75)%#5-(#- +907%5(#.+ 520-\$#%(# #+\$2" %(4 &-(45#5-(" -3 5("/\$%(&+
&7%/+"#. 8.+ 0\$+&+4+(# 5" #.## #.+ 0\$-:5"5-(" -3 #.+ #+\$2" %(4 &-(45#5-(" #.## #+; /5\$+ #.+ \$+\$/\$(
-3 %(1 /(+%\$(+4 0\$+25/2 %# #.+ #52+ -3 #.+ #+\$25(%#5-(-3 #.+ 6%\$\$%(#1 &-(#%&# %\$+ "% 2%##+\$
-3 (- 2-\$+ #.%(\$+0+%#5() -\$ %445() #- 6.## 5" "+# -/# 5(#.+ "%#/#/+""", "- %(+907%(%#5-(
-!75)%#5-(4-+" (- %\$5"+ 6.+(#.+ 0-75&1 5" #+\$25(%#5+4 0\$5-\$ #- #.+ 6%\$\$%(#1 %&&54+(# <(
%445#5-(, 5# 5" (-# &-(54+\$+4 #- !+ % !\$+%&. -3 4/#1 3-\$ #.+)/%\$%(#-\$ #- "+# -33 #.+ 0\$5(&50%7"
!-(4 5(.5" -\$.+\$ -6(!-(4.

<(753+ 5("/\$%(&+, 5# 5" 2-\$+ 75=+71 #- -!#%5(/ (3%6\$ 0\$-35#" !1 +(#+\$5() 5(- % (/2!+\$ -3
5("/\$%(&+ &-(#%&#" %(4 +907-5#5() #.+2, /(75=+ (-(-753+ 5("/\$%(&+ #.## %'"/2+" 5("/\$%17+ 5(#+\$+"#.
8.+ 0\$+&+4+(# \$/7+4 #.## %(5("/\$%(&+ &-(#%&# 3-\$ #.+ 0/\$0-" -3 -!#%5(5() #.+ 5("/\$+4 %2-/ (#
6%" 5(:%754 %) %5(" #.+)--4 &/"#-2" %(4 -#.+ \$ "-&5%7 -\$4+\$ "+# 3-\$#. 5(\$%5&7+ 103 -3 #.+ >5:57
&#. ?:+(53 #.++\$+ 5" (- +:54+(&+ #- 45\$+G %&=(-67+4)+ #.+ 0/\$0-" -3 #.+ 3\$%/4/7+(#
%&; /5"5#5-(-3 #.+ 5("/\$+4 %2-/ (#.+ 0\$+&+4+(# &-(&7/4+4 #.## "/&. %(-!@+:+ &-/74 !+
%00\$-:+4 3-\$:%\$5-/" \$+%"-(", "/&. %" #.+ "%#/#/" -3 #.+ 0-75&1.-74+\$" -&&/0%#5-((%4 0\$-0+\$#1, #.+
\$+%"- (3-\$ #.+ 7%\$)+ (/2!+\$ -3 5("/\$%(&+ &-(#%&#" , #.+ "5A+ -3 5("/\$%(&+ &-(#%&#" , %4 #.+
&5&8/2""#%(&+" %3#+\$ #.+ 5("/\$%(&+ &-(#%&# 6%" &-(&7/4+4. <3 % (/2!+\$ -3 753+ 5("/\$%(&+ &-(#%&#"
3-\$ % #.5\$4 0%\$#1 %\$+ %((/77+4, #.+ 0-75&1.-74+\$ " .%77 %7"- \$+\$/\$(#.+ 5("/\$+4 %2-/ (# %7\$+%41 0%64.
B53+ 5("/\$%(&+ &-(#%&#" %\$+ 7-)-#+\$2 &-(#%&#" %(4 (++4 #- !+ 2-4535+4 5(%&&-\$4%(&+ 65#.

2018년도 보험법 주요 판례의 분석

#.+ 0-75&1.-74+\$"" &5\$&/2"#%(&+" . 8.+ &\$+45#6-\$#.5(+"" -3 #.+ 0-75&1.-74+\$ -\$ #.+ %!575#1 #- 2++#
 #.+ -!75)%#5-(5" %(5 20-\$#%(# +7+2+(# -(6.5&. #.+ &-(#%&# 5" !%"4. >-("+" ; /+(#71, +:+(53 %(
 5("/\$+\$"" &-("+" (# %77-6" #.+ 0-75&1.-74+\$ #- #\$("25# 5#" 0-"5#5-(, #.+ 0-75&1.-74+\$ &%((-# #\$("3+\$
 5#" 0-"5#5-(5(%(5("/\$%(&+ &-(#%&# "-7+71 -(% /(57%#+\$%7 "#%#+2+(# -3 5(#+(# 65#.-/# #.+
 5("/\$+\$"" &-("+" (#.

'+16-\$4" : &-(#%&# -3 "\$+\$#1".50,)/%\$%((##+ 5("/\$%(&+, 5("/\$+\$"" 4/#1 -3 +907%5(5()) #.+ &-(#%&#"
 0\$-:5"5-(, %7#+\$%#5-(-3 5("/\$%(&+ &-(#%&#-\$